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03월 14일, 장문혁 의원 발의
-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3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문혁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제2조(정의) 부분 “민간위탁”과 “수탁기관” 정의를 상위법을 근거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근거로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 기존 수탁기관 정의에서 ‘관내 및 주소요건’ 부분을 삭제(안 제2조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섭)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의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의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의 “수탁기관”의 정의에서는 기존 조례 상 “관내 및 주소 요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임.

○ 조례안 제2조제3호의 “수탁기관의 정의”와 관련,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개인”을 “군 소재 또는 군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 한정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달리 수탁기관의 대상을 축소한 부분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군 소재**”를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으로, “**군에 주소를 가진 개인**”을 “**개인**”으로 한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창군수 (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u></p> <p>2. (생략)</p> <p>3. <u>“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군 소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군에 주소를 가진 개인(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u> 다만, 위탁사무에 따라 “수탁자”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을 각각 “수탁자로 본다.</p> <p>4.·5.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u>“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3. ----- <u>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u> ----- ----- <u>개인</u>----- ----- -----.</p> <p>4.·5. (현행과 같음)</p>